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김동승 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43
------	------

2016. 12. 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23일, 김동승 의원외 31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16. 12. 5)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동승 의원)

-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를 위해 시정전반평가 및 주요 중장기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검토로 통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함.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에 따라 서울시(이하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합적 평가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핵심운영원칙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지속가능발전의 의의와 연혁

-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1)는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²⁾의 '의제 21'로 지속가능발전이 채택된 이후,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지속 가능 발전을 핵심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제도화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8년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한 것을 필두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음.
-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도 2009년 3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그러나, 2010년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2011년 7월 위 조례를 폐지하였음.
- 이후 서울 시정의 주요행정계획 및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수립·시행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요 기능들은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규정해 주로 환경분야에 특화된 지속가능 의제의 실천과 이행상황 점검의 조치들을 통해 이행해 왔음.
- 2013년에는 당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하부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해오던 지속가능성 평가 등에 대한 조치가 환경분야에 국한되어 경제와 사회·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시정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현재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음.
- 최근 시는 기존의 위원회 운영 중심의 조례로는 지속가능성 평가 등 기본계획 실행의 추진력 확보가 곤란하고, 이행계획의 수립과 점검, 주요 행정계획 검토 등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여러차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조례 제정을 결정하였음.

다. 조례안 세부사항 검토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3조부터 제7조)

- 안 제3조부터 제7조는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에게 매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추진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기본계획과 여기에 따른 이행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규정에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의무로 시는 지난 2015년 4월 환경·사회문화·경제 3대 목표를 중심으로 12개 전략, 28개 과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기본계획을 통해 시는 시정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확산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 안 제6조는 시장이 최근 2년간의 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음.
- 매년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점검 후 시장에게 다시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행계획에 대한 성과점검은 물론이고, 이행계획 수정과 보완을 통해 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제고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안 제7조는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이행계획과 연관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행정계획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이와 관련해 안 별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비롯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할 31개 항목의 행정계획을 열거하였음.
- 별표의 중·장기 행정계획 항목 가운데 제6호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3 제1항을 관련 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4대강수계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2) 지속가능성 평가 등(안 제8조 및 제9조)

-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우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이 지표에 따라 위원회가 이행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음.
- 또한, 매 2년마다 이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향후과제와 정책 방향을 모두 포함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위원회가 작성해 공표하도록 하였음.
- 시는 2015년 기본계획 수립시에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연관성, 시한성 등 5개 지표개발 원칙에 따라 모두 30개 지속가능발전 지표(환경 10개, 사회문화 10개, 경제 10개)를 설정하였음.
- 사회, 환경, 경제 등 각기 상이한 분야들 사이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통계적 방법으로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각 분야간 의사소통의 촉진과 정보 제공 수단으로 활용성이 크고, 각 발전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데 반

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향후과제와 정책방향을 모두 포함한 지속가능성보고서 공표를 통해서 시의 지속가능발전 구상과 계획을 각 실·본부·국은 물론이고 자치구와 공유해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부터 제17조)

- 시는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시장과 위촉위원 1명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 따라 시는 이미 2013년부터 9명의 당연직 위원과 30명의 위촉직 위원을 합해 39명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
- 특별히 안 제14조는 위원회가 40명 이내의 대규모 인력으로 구성됨에 따라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운영협의회와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지속가능과 연관된 분야가 각기 상이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상이한 점에서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방식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3년간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운영협의회, 소위원회 등을 포함해 모두 67회 회의가 개최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자문과 기본계획 수립, 시범평가 보고서 심의, 조례(안) 마련 등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심의와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 실적〉

구 분	회의개최 현황	비 고
2014년	22회	전체회의 5, 운영협의회 6, 소위원회 11
2015년	19회	전체회의 3, 운영협의회 3, TF회의 13
2016년	26회	전체회의 3, 운영협의회 8, 소위원회 등 15

- 위원회 규모가 크고, 전공 분야가 상이한 다수의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각 분야에 따른 공정한 위원 위촉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성과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노력이 요구됨.

라. 종합의견

- 기존의 조례로는 지속가능성 평가 등 기본계획 실행의 추진력 확보가 곤란하고, 이행계획의 수립과 점검, 주요 행정계획 검토 등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조례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함.

- 다만, 법 제정이후 수 차례 시의 의도에 따라 조례의 개·폐가 이루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업무 추진과 관심있는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43
----------	---------

제안년월일 : 2016년 12월 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 해야하는 행정계획 가운데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적용 범위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근거법령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함(안 별표).
- 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6항 중 “송부 받은”을 “송부받은”으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제1호나목 중 “위임 받은”을 “위임받은”으로 한다.

안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 ③ <원안과 같음></p>
<p>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① ~ ⑤ <생략></p> <p>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u>송부 받은</u>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p>	<p>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① ~ ⑤ <생략></p> <p>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u>송부받은</u>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p>
<p>제14조(운영협의회 등) ① <생략></p> <p>②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운영협의회</p> <p>가. <생략></p> <p>나. 위원회로부터 <u>위임 받은</u> 사항</p> <p>다. <생략></p> <p>2.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14조(운영협의회 등) ① <생략></p> <p>②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운영협의회</p> <p>가. <생략></p> <p>나. 위원회로부터 <u>위임받은</u> 사항</p> <p>다. <생략></p> <p>2. <생략></p> <p>③ ~ ④ <생략></p>
<p>[별표] 중·장기 행정계획(제7조 제1항 관련) 1.~ 5.<생략></p> <p>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1항의 규정에 의한 <u>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u></p> <p>7.~ 31. <생략></p>	<p>[별표] 중·장기 행정계획(제7조 제1항 관련) 1.~ 5.<생략></p> <p>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u>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u></p> <p>7.~ 31. <생략></p>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행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최근 2년간의 이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7조(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절차 등) ①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해당 행정계획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또는 소관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지 않더라도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안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 또는 이행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협의회에서 중·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 또는 안건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경제·사회·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 심의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3.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주요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5.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사회 문화·환경 분야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운영협의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

- 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사전 검토·조정
- 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다.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등

- ③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협의회

- 가. 10명 이하
- 나. 운영협의회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

2.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 가. 기능에 따라 필요한 인원
- 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장과 간사는 호선

- 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자문할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전에 대해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에서 배제한다.
- ③ 위원이 심의·자문할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자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제1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민관협력의 증진)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교육홍보 등)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제21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중장기 행정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녹색성장위원회로 본다.

[별표] 중·장기 행정계획(제7조 제1항 관련)

1.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3. 「에너지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 계획
4. 「폐기물관리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7. 「수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
10.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1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대중교통계획
1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14. 「영유아보육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 계획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보장계획
16. 「주거기본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종합계획
1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중장기계획
18.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19.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4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20.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21.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23.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기본계획
24.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25.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2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27. 「관광진흥법」 제4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28.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29.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제5조의2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31.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 중·장기 행정계획